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탄광 노조위원장이 대의원 11명과 함께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익사체”로 발견된 경우

(89-108호 '89. 5. 22.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이○○

주소: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원처분청: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상 동

주소: "

피재근로자

성명:장○○

주소: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소속:○○탄광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탄광 노동조합위원장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1988. 7. 27. ○○탄광협의회가 주최하는 하계수련대회에 대의원 11명을 인솔하고 삼척군 소재 맹방해수욕장에서 수련중 동년 7. 28. 점심 식사후 행방불명되어 동년 7.29. 20:30경 해수욕장에서 삼척방향으로 3km지점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청구인은 원처분청에 보험법 제 9조의 6 및 제 9조의 8에 의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하기수련대회를 관행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회사에서 행사 소요경비 100만원과 왕복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참석대의원에 대하여 교육기간동안 유급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89. 3. 21. 이○○)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3. 21.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1. 28. 김○○)
4. 사체검안서 사본(1988. 8. 1. 삼척의료원장)
5. 사망사실통보 사본(1988. 8. 22. 삼척경찰서장)
6. 자문의 소견서 사본
7. 감정의뢰회보 사본(1988. 8.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8.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8. 11. 14. 7급 박○○)
9. 문답서 사본(장○○, 김○○, 임○○)
10. 기타

이상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외로 인

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이 타당하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련대회 참석자에 대하여 연수기간동안 유급처리 하였다고 하나 총소요경비 3,403,060원 중에서 회사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였을 뿐이며, 참석범위 또한 노동조합 간부 12명만 참석하였을 뿐으로 사업주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거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주관하에 노사전원이 참석하여 노사화합과 단결의 목적으로 시행한 행사라고는 볼수 없고 피해당일인 1988. 7. 28의 날씨는 흐리며 쌀쌀하고 파도가 심하므로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개별행동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시킨 사실이 있었고 삼척경찰서장의 사망사실 통보에 의하면 “타살혐의 없고 익사로 인정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재해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수산 근로자가 굴 수매를 위해 승선하여 동료 근로자와 싸우다가 피살된 경우

(89-166호 '89. 5. 22.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정○○

주소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원처분청 :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최 ○

주소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소속 : ○○수산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3. 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8. 11. 27. 굴 수매를 위하여 굴 양식장으로 가던 중 높은 파도로 여수 앞바다에 정박 후 피재자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김○○과 술을 먹다 안주를 만들 것을 요구하자 김○○이 이를 거부하므로 피재자가 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으며 식사후 피재자 등 4명(선장포함)이 선박에서 하선하여 다시 음주후 24:00경 귀선하여 선장의 1명은 취침을 하고 피재자와 김○○은 주방으로 간 후 동년 11.28. 01:00경 주방에서 다시 싸움끝에 김○○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재자의 좌측 흉부를 찔러 사망케 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인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9. 4. 정○○)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4. 25.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
3. 산재심사관 결정서(1989.3.29. 심사관 오○○)
4. 유족급여 사정서 사본(1989. 3. 8.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
5. 사망진단서 사본(1988. 12. 5. 전남병원의사 정○○)
6.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9. 3. 충무지방사무소 주사보 김○○)
7. 문답서 사본(1989. 2. 3. 근로자 서○○, 동년 3. 2. 정○○, 이○○)
8. 사망사고 회보사본(1988. 12. 12. 여수경찰서장)
9.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데, 피재자는 ○○수산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8. 11. 27. 굴 수매를 위하여 승선중 동년 11. 17부

터 동년 11. 28.까지 동료선원들과 2회에 걸쳐 음주 후 동일 24:00경 귀선하여 동료근로자 김○○과의 싸움끝에 익일인 11. 28. 01:00경 주방에서 김○○에게 피살 사망하였으므로 원처분청에서는 업무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주 지배관리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첫째:피재자는 1988. 11. 27. 동료근로자 김○○과 승선중 음주하였고 저녁식사 후 선장 및 피재자 외 2명과 같이 하선하여 다시 음주후 동일 24:00경 귀선함으로써 업무수행중 근무지를 이탈까지 하면서 음주한 사실이 명백하다.

둘째:원처분청의 중대재해 실시조사 복명서와 여수경찰서장의 사망사고 회보 및 동료근로자인 선장 서○○ 외 2명의 진술내용을 보면 “1988.11.26. 01:00경 선박이 전남 여수시 남산동 소재 ○○산업 협동조합 앞 선착장에 정박하였을 때 선상에서 변사자(피재자 최○)가 같은 배 선원(화장)인 가해자 김○○(18세)에게 술안주로 돼지고기를 볶으라고 하였으나 김○○이 이를 거절하자 변사자가 김○○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동 선박내 식당으로 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한 김○○이 동소도마위에 있던 식칼로 변사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흉부내 장기좌상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한 것이다”로 김○○은 1988. 11. 29 상해치사죄(사건 5891호)로 입건 구속 송치되었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판단하건데 피재자의 경우 동료와 싸움끝에 타인(김○○)의 폭력에 의한 재해(사망)로서 업무와 가해행위와의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적용 처분한 것은 타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